

금융투자상품 이해상충방지준칙

소관부서 : 상호금융수신지원부(T.3210)

[2021.09.24. 개정]

제1장 총칙 등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 감독규정”이라 한다),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라 본 조합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상충의 관리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준칙은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해상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및 금소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소법 및 금소법 시행령, 금소법 감독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규정, 자본시장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은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영업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을 말한다.
2.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산상 이익제공”이란 본 조합이 본질적 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본 조합의 투자자인 개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에게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산상의 이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말한다. 다만, 경제적 가치가 3만 원 이하인 물품, 음식비 또는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 등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정보차단벽”이란 본 조합의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보고의무)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부서(“부, 과, 팀” 등을 통칭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이 준칙 등 제규정과 관계법령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투자협회 등이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위법·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알게 된 경우
4. 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제5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 본 조합 또는 본 조합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또는 본 조합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매거래의 규모 및 횟수 등이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조합 또는 투자대상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매매거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제6조(계좌개설 및 신고) ① 임직원은 자기계산에 의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지분증권 등”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한다.

1. 거래 금융투자회사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또는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③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지분증권 등의 매매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1. 투자중개업자가 계좌를 금융투자상품별로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④ 임직원은 본 조합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투자상품 판매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좌명
2. 계좌번호
3. 금융투자회사명

⑤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 보고)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은 매월 종료 후 다음 달 10영업일까지, 그 밖의 임직원은 분기종료 후 다음 달 10영업일까지 분기별로 지분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금융투자상품 판매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보고된 지분증권 등의 매매거래 내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자격 투자권유대행인을 고용하는 행위
2. 보수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부당 지급 또는 리베이트 하는 행위
3. 높은 보수수취 또는 그 밖에 위법·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변칙 등록하는 경우
4.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또는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5.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6.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7.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9.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0.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11. 제3자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12.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 또는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그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13.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관계법령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8조(자료의 유지 및 보관)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준칙」 별지 제8호에서 정하는 최소보존 기간(계약서 등 권리·의무 및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무 및 사실관계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동안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등에서 보존기간을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준칙」 별지 제8호보다 장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할 기록이 사후 위·변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검사·조사시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보존기간 동안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준칙」 별지 제8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의 열람 및 제공방법 등 절차는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준칙」 제34조를 따른다.

제2장 영업행위

제9조(영업의 일반원칙) 임직원은 투자자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자금의 성격, 위험선호도 등 투자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한다.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3.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관련된 위험 등 금소법 제19조 및 금소법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중요사항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4. 투자자의 인적사항 및 매매거래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5. 투자자에 대한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변조, 매매거래 유인을 위한 사기·기망 등 위법·부당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임직원 중 금융투자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등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금융투자상품 권유·판매 등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자격의 효력 유지 등을 위해 투자자보호교육 등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영업행위) ① 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험도를 분류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본 조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조항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1조(투자광고의 일반원칙) 임직원은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관련 위험의 충분한 고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투자광고시 의무표시 사항) ①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123조제1항에 의한 투자설명서, 자본시장법 제124조 제2항제3호에 의한 간이 투자설명서, 본 조합이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2.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4. 환매 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기

5. 환매수수료

6.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이 경우 보수는 총보수, 운용보수, 판매보수, 기타보수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7. 고유한 특성 및 위험성 등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특성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

8. 금융투자협회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금융투자회사의 의무고지 사항」 중 해당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9.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금융상품의 명칭, 이자율, 수수료, 이자·수익의 지급 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연계투자계약이 있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10.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 대한 사항

11. 해당 광고가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음에 대한 사항

12.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금융소비자가 보호되는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 5에서 정하는 내용 중 투자광고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제10호에서 제13호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광고시 간의 제약 등에 따라 해당 내용을 광고에 모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내용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에 관한 사항,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금소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내용을 투자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투자광고시 금지행위) 임직원은 투자광고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들이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는 행위 및 세전·세후 여부를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

3. 집합투자기구 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 및 투자 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 등에 대하여 예상수익률 또는 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상환목표수익률,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의 전환목표수익률, 주식워런트증권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조건별 예상 수익률은 표시할 수 있다.

4.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광고에 다음 각 목 외의 사항을 표시하는 행위

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라. 집합투자기구의 조직, 집합투자재산 운용인력 및 운용실적

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바. 금소법 감독규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5.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등과 비교하는 행위

6.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
7.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영위업무에 대한 광고내용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지 않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주는 행위
8. 금융투자협회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0의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 관련 금지행위」에서 열거하는 행위
9. 수익률, 수수료, 수상실적 및 통계수치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수익률, 수수료 등(이하 이 목에서 “수익률등”이라 한다)을 특별히 우대하여 제시하면서 우대조건·기간 등을 수익률등의 글자 크기의 3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익률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 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또는 운용실적의 비교(이하 이 목에서 “운용실적등”이라 한다) 표시를 하면서 기준일, 산출기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비교대상의 수를 운용실적등의 글자 크기의 3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운용실적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및 기준일을 투자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는 행위
 - 다. 수상실적 또는 통계수치(이하 이 목에서 “수상실적등”이라 한다)를 특별히 강조하여 표시하면서 그 출처, 시기, 조건 등을 수상실적등의 글자 크기의 3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상실적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10. 사진·문자·그림 등을 이용하여 법인·단체를 포함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11.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 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행위
1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13. 계약 체결 여부나 투자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14. 투자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15. 자본시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비교하여 광고하는 행위
16. 광고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광고매체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상호를 부각시키는 등 투자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17. 그 밖에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제14조(투자광고의 절차 등) ① 임직원은 투자광고시 금융투자상품 판매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받고 투자광고 계획신고서와 투자광고안을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투자광고문에 금융투자협회 심사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협회의 심사가 면제되는 투자광고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준법감시인의 심의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상품 판매 준법감시인은 사전심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광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자의 색깔·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크기 등이 해당 금융상품으로 인해 투자자가 받

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재산상 이익의 제공·수령기준) ① 임직원은 투자매매계약 또는 투자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투자자나 거래상대방 등이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으며 통틀어 “거래상대방 등”이라 한다)에게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수령받는 경우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본 조합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2. 경제적 가치가 3만 원 이하인 물품 또는 식사·신유형상품권(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 준약관에 따른 물품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을 말한다)·거래실적에 연동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차별 없이 지급되는 포인트·마일리지
3. 5만 원 이하의 경조비 및 10만 원 이하의 조화·화환
4.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

③ 제2항제4호의 경우로서 임직원이 제공하거나 수령받은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상임이사 또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준법감시인은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재산상 이익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금전의 경우 : 해당 금액
2. 물품의 경우 : 구입비용
3. 접대의 경우 : 해당 접대에 소요된 비용. 다만, 본 조합의 임직원과 거래상대방이 공동으로 참석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체 소요경비 중 거래상대방이 점유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4.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의 경우 :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상 이익의 경우 :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제17조(재산상 이익의 제공 한도) ① 동일 거래상대방등(거래상대방등이 개인인 경우 거래상대방등의 본인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동일 거래상대방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상임이사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재산상 이익의 수령 한도) ① 임직원등이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1회당 및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임이사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있다.

1. 1회당 수령 한도 : 20만원
2. 연간 수령 한도 : 300만원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교통비 및 숙박비는 상임이사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절차) ① 임직원은 거래상대방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등, 경제적 가치 등이 기재된 문서를 미리 금융투자상품 판매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② 본 조항은 거래상대방 등에게 제공하였거나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역,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을 5년 이상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 등의 소속기관의 장이 서면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상품 판매 준법감시인은 재산상 이익의 제공현황, 적정성 점검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3.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투자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의 고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금전, 상품권 또는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사용범위가 공연·운동경기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위법·부당행위의 은닉 또는 그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거래상대방등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② 임직원은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등에게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투자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재산상 이익의 제공·수령내역 공시) ① 본 조항은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거래상대방등에게 제공하거나 거래상대방등으로부터 수령 받은(이하 “제공·수령”이라 한다) 재산상의 이익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하며, 최초 공시 이후 동일한 업무의 계약 기간 중 추가로 제공·수령한 이익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본 조항이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수령 일자 및 제공·수령 기간

2. 제공받은 자(본 조합이 수령한 경우에는 제공한 자)

가. 개인 : 성명, 다만, 성명 일부는 보이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

나. 법인·단체 : 해당 법인·단체의 명칭이 아닌 영위하는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업종별 세세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 제공·수령 목적

4. 제1호의 기간 중 제공·수령한 이익의 경제적 가치의 합계액(경제적 가치는 동일한 업무의 계약기간 중 제공한 모든 이익의 합계를 말한다)

제22조(업무위탁) ① 본 조합은 금융투자업 및 자본시장법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업무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5.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6.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4 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③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④ 업무위탁 계약 체결시 담당부서는 위탁범위 및 위탁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 판매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업무위탁관련 담당부서는 업무위탁과 관련된 자료(업무위탁계약서, 업무위탁 운영기준,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등을 포함한다)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⑥ 본 조합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가 맡긴 금전,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하는 정보는 위탁한 업무와 관련한 정보일 것

2.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할 것

3.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수탁자의 정보이용에 관하여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

⑦ 본 조합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보호 및 위험관리·평가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2. 업무위탁의 결정·해지절차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투자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부도 등 우발상황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 확보에 관한 사항

- 7.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8.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⑧ 본 조합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자본시장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 설명서를 포함한다)에 기재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이해상충의 관리

제23조(투자자 이익 우선) ① 투자자의 이익은 본 조합, 본 조합의 이해관계인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② 본 조합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③ 모든 투자자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제24조(이해상충문제의 숙지 및 차단) 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본 조합이나 투자자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 조합의 사전승인을 얻어 본 조합 업무 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본 조합 또는 투자자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① 임직원은 본 조합과 투자자 간 또는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판매 준법감시인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고,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 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의 발생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정보교류의 차단) 본 조합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및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정보(이하 “교류차단대상정보”라 한다)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로서 본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하여 공개한 주요 정보는 제외한다.

1. 자본시장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4장 증권투자매매업무 및 투자중개업무

제2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본 조합 및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3.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 주권

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5.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6.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자본시장법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4-20조 등에서 정하는 행위

제28조(수시잔고 조회) 임직원은 거래인감 변경, 영업점간 이관·이수, 통합계좌에서의 해제 등이 발생한 고객의 계좌에 대하여 잔액·잔량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집합투자증권 판매) ① 임직원은 자신이 받는 판매보수율이나 모집수수료율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판매 또는 모집에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본 조합은 집합투자상품별로 보상이나 성과보수 지급기준 등을 차등 적용하거나 집중적인

판매독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상수익률의 보장
2.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의 사용
3.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제5장 보 칙

제30조(세부 지침 등의 제정) 이 준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준법감시인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준칙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6. 개정)

이 준칙은 2018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5.21. 개정)

이 준칙은 201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24. 개정)

이 준칙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